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경과 중간보고

2009. 11. 20.

경기도교육청

## < 목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진행 경과 보고 ..... 6

### <첨부자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바란다

-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 별 사전 협의회 통계 - ..... 15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그래서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 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침 오늘이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5월 28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7월 8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박노현 위원장(방송통신대 교수, 전국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 모두 1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여덟 차례의 협의회를 거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4시부터는 일본 가와사끼시 아동권리조례 제정에 참여한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팀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신종플루 때문에 원래의 계획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계획된 9개 권역 중 6개 권역에서 각 권역별 130여명씩 총 800명에 가까운 각 주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장애 학부모와 교사,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사 등 100여명과의 사전협의회가 26일에 실시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월 28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 실태조사와 기초연구를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오늘 공개발표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곧 이어서 따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달 말에는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용역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차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제1의 기본원칙으로서 “학생은 인권의 주체” 라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하여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공모를 하여 각 영역별 우수 작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오늘이 그 발표일입니다. 글짓기와 그림은 초·중·고 각각 최우수 1인과 우수 2인, UCC는 최우수 각 1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한 것인데,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사이버공간에서(<http://cafe.daum.net/youthhuman>) 스스로 자유롭게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자문위원회는 그 논의결과를 반영할 것입니다.

물론 자문위원회는 홈페이지(<http://human.kerinet.re.kr/>)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또한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기획단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과의 사전협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들로부터 설문을 받았습니다. ① 조례제정의 필요성, ② 조례제정 기본원칙, ③ 자문위원회의 철학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각각에 대하여 94.9%, 92.1%, 89.3%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었고, 학부모 82.0%, 79.7%, 78.9%, 교사 66.0%, 72.3%, 71.6%, 관리자 59.42, 68.1%, 63.8%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사 및 관리자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과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참고). 예컨대 교사의 경우 ① 27.0% 대 8.5%, ② 24.1% 대 8.5%, ③ 24.1% 대 8.5%의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주체들로부터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그리고 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공감과 다양성의 양면을 적절히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왕따 등 집단괴롭힘 금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각종 고민상담 등 학생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교관리자가 1순위, 교사가 2순위, ‘자율적 학생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관리자 2순위, 학생과 교사 3순위로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생은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를 2순위, 학부모는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강화’를 3순위, 학교관리자는 ‘인권교육 강화’를 3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다른 3주체와 골고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학생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교사의 경우 36.9%, 학교관리자의 경우 37.7%에 그쳤습니다. 학생의 인권 증

진이 교사의 교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교사는 매우 공감에 11.4%, 전혀 공감하지 않음에 22.7%였고, 학교관리자는 각각에 대하여 7.3%, 8.7%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교사의 체감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에 따라서는 적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더 잡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 그리고 교사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과정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한 자문위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율적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일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유와 자율 속에서 책임과 절제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 위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의 교육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 교육문제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자포자기의 태도가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과 교사가 그 산더미 같은 교육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을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의 객체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교육문제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의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우리 사회의 후속세대야말로 사회에 나가서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09. 11. 20.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진행 경과 보고

## 1. 연구 진행 개요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자문위원회의 조례안 성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연구용역팀을 공모한 바 있음. 총 5개 팀이 연구용역팀에 응모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팀을 연구용역팀으로 선정한 바 있음.

-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는 진영중 교수(센터 소장)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총 5명의 연구진과 보조연구원을 두어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였음. 11월 20일 연구용역팀은 중간보고서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최종 보고서는 11월 28일 발표할 예정임.

### ■ 연구팀 구성

- 책임 연구원 : 진영중 교수(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소장)
- 공동 연구원 : 하승수(제주법대 교수)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지수(경기도 군포시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오혜원(호계중학교 교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연구용역팀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성안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임. 연구용역팀이 제안한 조례안은 다만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의해주시길 바람.

## 2. 연구 진행 경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팀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지 개발을 위한 학생 대상 Pretest 실시 △설문조사 △전문가와 학생 소수자 심층 면접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거쳐 11월 20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함.

-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27일 ~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고,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기도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학생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심층 면접조사는 △장애 △이주(다문화) △빈곤 △학생선수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학생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면접조사는 경기도 교육환경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 역점을 두었음.

### 3. 연구용역팀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

#### □ 경기도 학생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 ◎ 초등학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체벌]** 교사가 얼굴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손으로 때린다는 응답은 19.3%. 단체로 벌을 받는다는 응답은 45.9%. 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을 주어서 수업을 못 듣게 한다는 응답은 24.8%. 체벌이나 부적절한 처벌 방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프라이버시]** 가방, 소지품 검사를 당한다는 초등학생들은 10.1%이고 일기장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은 60.6%. 8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일기장 검사나 휴대전화 규제 등에 대한 인권위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

○ **[심각한 인권문제]**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잡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 순으로 대답함.

○ **[학생인권 보장 정도]**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17.5%,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 등으로 나타남. 초등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상황은 대체로 나쁘지 않으나 그럼에도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이고 자신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17.5%에 이룸.

○ **[인권교육 경험]** 7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거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두발복장규제]** 두발복장규제가 99.4%로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존재.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에는 재검사, 훈계, 악세서리 등 압수, 체벌, 벌점 등으로 나타났고 강제이발이나 강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의 처벌도 30% 안팎의 응답률을 나타냄.

○ **[강제 수업]**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오후.저녁 보충수업,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중 40% 안팎 또는 과반수 이상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7시 30분~59분 사이가 41.7%로 가장 많음. 하루 수업시간을 묻는 질문에 6~7시간이 33.5%, 5~6시간이 29.5%. 5시간 미만도 14%로 나타남.

○ **[체벌 경험]** 체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해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답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이 26.4%로 중고등학생들의 체벌 현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답은 6.2%에 그침. 체벌의 이유로는 과제나 수업태도, 두발복장 규정 등 위반, 지각이나 결석이 가장 많이 꼽힘.

○ **[참여와 의견 표현]**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은 19.0%뿐임.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이 40.1%. 학생회 운영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높은 등 학생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차별]** 학교에서 차별 사유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 57.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가 41.2%. 나이나 학년에 의한 차별, 외모,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이 30%대로 나타남.

○ **[수업권 박탈]**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58%의 학생들이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답함.

○ **[교육환경]** 보건실 사용, 겨울철 화장실 사용, 교실 냉난방 시설, 탈의실 등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음. 56%의 학생들이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53.2%의 학생들은 고민이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을 하기 어렵다고 답함. 학교내 화장실, 도서실, 식당, 매점 등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55.3%의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함. 실습 기자재 등이 부족하다고 47.2%의 학생들이 답함.



○ **[인권 보장 정도]**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0.5%,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20.3%로 50.8%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

○ **[시급한 개선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두발규제 → △복장규제 →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 △단체기합 및 체벌 순으로 조사됨.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입시경쟁 해소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순으로 나타남.

○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 87.4%, 의견없음 11.3%, 반대 1.3% 순으로 나타남.

## ◎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인권교육 필요성과 경험]**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97.1%이지만 53.8%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음. 인권교육 실시에서 어려운 것은 안정적인 시간 확보, 인권교육 내용에 자신이 없는 경우 등이 꼽힘. 교사가 된 후 인권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17.3%밖에 되지 않음.

○ **[학생자치권]** 교사들은 학생회자치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학생회칙 제정과 개정의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 및 조율이 필요하다, 학생회 건의 사항을 교직원회의 등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등 학생 자치권에 대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임.

○ **[체벌 대체 수단]**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상담전문가와 상담과 치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2%,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3.2%. 또한 노동이나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 과도한 교사업무 경감, 두 번째 과밀학급해소, 세 번째 학생 간 폭력금지, 네 번째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상벌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체벌이 여전히 존재,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짐을 꼽음.

○ **[학생간 폭력 대안]** 학생 간 폭력, 금품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운영 강화가 34.5%,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 28.3%,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교육이 18.4%, 인권교육 실시가 14.8%.

○ **[교육환경]**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 남녀 탈의실 마련, 학생휴게공간 마련, 냉난방 시설, 보건실 확보, 별도의 상담실 확보 등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높음.

○ **[강제수업]** 정규수업외의 특기적성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자율학습 참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인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6.9%로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 보장에 긍정적.

○ **[시급한 개선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로는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과잉학습을 꼽음. 학생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입시경쟁해소 → △인권교육 강화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노후한 교육시설 개선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순으로 선택함.

## ◎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정보접근]** 학생생활관련 상벌규정 및 성적관리 규정이 보호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 56.5%,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30.1%, 잘 모르겠다 11.4%. 40% 가량의 보호자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낌.

○ **[징계 변론권]** 학생 징계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29.3%,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 24.1%. 잘 모르겠다고 29.9%로 징계와 관련한 당사자 의견진술 보장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학생인권 보장 정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조금 침해 29.3%, 매우 침해 8.4%로 많은 보호자들이 제대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확실적인 학교 규정(18.9%), 입시 위주의 교육(17.1%)을 꼽고 있음. 교직원의 변하지 않는 인권의식(15.3%)과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구조(13.0%), 보호자 및 성인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11.1%)과 체벌 및 징계(10.5%)도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목됨.

○ [시급한 개선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개를 꼽아달라고 한 것에서는 22.8%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집단따돌림)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14.8%)과 학생 의사표현 규제(14.2%)라고 응답.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꼽아달라고 하자, 가장 많은 보호자가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22.8%), 그 다음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14.8%),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14.2%)라고 응답.

### ◎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상황 관련 면접조사 결과

○ 장애, 성소수자, 빈곤, 이주(다문화), 한부모 등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인권교육의 강화였음. 장애이해,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 성교육, 다문화 이해, 한부모 등에 있어서 학생,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나 드러내기 어려운 성정체성 같은 경우 구제기구를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 피해자에 대해 상담 서비스나 관련 단체를 소개시켜 주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필요함. 개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학교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 조례의 문구보다는 교육청의 지속적 정책 접근이 요구됨.

### □ 세계 각국의 아동 인권 보장 움직임

- 오늘(11.20)로 채택 20주년을 맞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음. 미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2007년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실천은 일본이 대표적. 일본은 종합조례 형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0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市)를 필두로 총 13곳에 이르며, 아동 참여나 학대방지 등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동 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도 16곳에 이룸. 그 외에도 시 정책을 추진하는 원칙으로 아동 권리 보장을 정해둔 지자체도 30여 곳에 이룸.

-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권리 구제기구로서 옴부즈퍼슨(Ombuzperson) 또는 옴

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옴부즈퍼슨 또는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부 통제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 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어 있음. ENOC의 구성원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29개국에 이룸.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 인권 옴부즈퍼슨을 설치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방(8개 지방)에 아동옹호관 또는 아동옴부즈만(children's advocate/ombudsman)이 설치되어 있음. 미국 미시간 주의 아동옴부즈만, 영국의 아동커미셔너, 일본 가와사키 시의 인권옴부즈퍼슨 제도 등이 대표적임.

##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열개

- 연구용역팀은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외국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열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 ◎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

○ **인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명시된 아동인권에 대한 기준을 한국, 특히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 예를 들면 학생들의 쉴 권리를 박탈하게 될 수 있는 과도한 0교시 수업에 대해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둘 수 있음. 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인 강제이발, 두발규제 등을 제재하는 근거를 조례에 둘 수 있음.

○ **인권교육의 실시와 지원** : 인권교육은 학생들과 교사들, 보호자들에게 모두 필요. 교사와 보호자를 학생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의 옹호자가 초대하기 위한 것.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배워서 인권침해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

○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수립** : 인권문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 필요.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인권문제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또한 인권교육이나 홍보 등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 또한 학생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계획의 수립이 중요함. 조례의 운영만으로는 구체적인 학생인권 상황에 대

처하기 어렵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킬 수 없음. 세부적이고 성의있는 실천계획을 통해 학생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기구 설치** : 인권침해는 단순한 상담뿐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조사하여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조사 및 문제해결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설립.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책임있는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면 음부즈퍼슨의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음.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및 예방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조정 △학생인권실태조사 △연차 보고서 발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며 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각 지역교육청 별로는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함.

○ **학생의 참여 보장** : 학생의 참여는 학교, 지역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단위로 구분하여 참여시스템 구축. 학교단위에서는 학칙 및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의 참여, 학생의 권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권, 학생자치활동 보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단위에는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 등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열개

- 연구용역팀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인권교육 실시 의무 부여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 옹호관 설치와 상담·구제절차 명시 △도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와 학교단위 학생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음.

### □ 학생인권조례 열개(안)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절 학생의 교육권

제4절 쉬고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

제5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제6절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등

제7절 복지권

제8절 학칙 및 징계 관련

제3장 인권교육

제4장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상담 및 구제 절차

제6장 학생 참여

제7장 보칙

<첨부자료>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바란다 -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 별 사전 협의회 통계 -

### I. 구분

구분	학생(명)	학부모(명)	교사(명)	학교관리자(명)	계(명)
고양교육청	34	34	20	11	99
의정부교육청	37	25	25	15	102
용인교육청	29	16	27	9	81
수원교육청	30	17	23	16	86
안양교육청	20	23	24	9	76
안산교육청	27	13	22	9	71
계	177	128	141	69	515

### II. 응답 내용

1. 경기도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인 측면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인 측면	응답자 수
학생	명	108	60	168	8	1	9	177
	비율(%)	61.02	33.90	94.92	4.52	0.56	5.08	
교사	명	38	55	93	36	12	48	141
	비율(%)	26.95	39.01	65.96	25.53	8.51	34.04	
학부 모	명	58	47	105	18	5	23	128
	비율(%)	45.31	36.72	82.03	14.06	3.91	17.97	
학교 관리 자	명	9	32	41	22	6	28	69
	비율(%)	13.04	46.38	59.42	31.88	8.70	40.58	
계								515

2.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기본원칙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인 측면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인 측면	응답자 수
학생	명	87	76	163	13	1	14	177
	비율(%)	49.15	42.95	92.1	7.34	0.56	7.9	
교사	명	34	68	102	27	12	9	141
	비율(%)	24.11	48.23	72.34	19.15	8.51	27.66	
학부 모	명	52	50	102	19	7	26	128
	비율(%)	40.63	39.06	79.69	14.84	5.47	20.31	
학교 관리 자	명	12	35	47	20	2	22	69
	비율(%)	17.39	50.72	68.11	28.99	2.90	31.89	
계(명)								515

3.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PPT자료)에 담긴 조례자문위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인 측면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인 측면	응답자 수
학생	명	72	86	158	18	1	19	177
	비율(%)	40.68	48.59	89.27	10.17	0.56	10.73	
교사	명	31	67	98	31	12	43	141
	비율(%)	24.11	47.52	71.63	21.99	8.51	30.5	
학부 모	명	54	47	101	25	2	27	128
	비율(%)	42.19	36.72	78.91	19.53	1.56	21.09	
학교 관리 자	명	12	32	44	21	4	25	69
	비율(%)	17.39	46.38	63.77	30.43	5.80	36.23	
계(명)								515



4. 학생인권 증진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인 측면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인 측면	응답자 수
학생	명	97	58	155	19	3	22	177
	비율(%)	54.80	32.77	87.57	10.73	1.69	12.42	
교사	명	27	52	79	45	17	62	141
	비율(%)	19.15	36.88	56.03	31.91	12.06	43.97	
학부 모	명	45	56	101	23	4	27	128
	비율(%)	35.16	43.75	78.91	17.97	3.13	21.1	
학교 관리 자	명	12	21	33	30	6	36	69
	비율(%)	17.39	30.43	47.82	43.48	8.70	52.18	
계(명)								515

5. 학생인권 증진이 교권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인 측면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인 측면	응답자 수
학생	명	63	87	150	22	5	27	177
	비율(%)	35.59	49.15	84.74	12.43	2.82	15.25	
교사	명	16	36	52	57	32	89	141
	비율(%)	11.35	25.53	36.88	40.43	22.70	63.13	
학부 모	명	39	45	84	33	11	44	128
	비율(%)	30.47	35.16	65.63	25.78	8.59	34.37	
학교 관리 자	명	5	21	26	37	6	43	69
	비율(%)	7.25	30.43	37.68	53.62	8.70	62.32	
계(명)								515

6. 주요 학생인권과제 10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

순	항목	학생 (177명)		교사 (141명)		학부모 (128명)		학교 관리자 (69명)		계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1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119	67.23	50	35.46	44	34.38	13	18.84	226
2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85	84.02	84	59.57	84	65.63	43	62.32	296
3	자율적 학생회/학생활동 보장	99	55.93	67	47.52	48	37.5	48	69.56	262
4	무작위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보장	52	29.38	27	19.15	26	20.31	13	18.84	118
5	각종 고민상담, 교육 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	60	33.90	79	56.03	84	65.63	69	100	295
6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59	33.33	29	20.57	61	47.66	30	43.48	179
7	학생인권 침해 구제 수단 강화	39	22.03	18	12.77	38	29.69	21	30.43	116
8	체벌 금지	80	45.20	40	28.37	37	28.91	41	59.42	198
9	가정형편/성적/용모차별 금지	66	37.29	49	34.75	43	33.59	31	44.93	189
10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89	50.28	64	45.39	48	37.5	37	53.62	238
11	각종 문화 활동 접근과 참여 보장	40	22.60	44	31.21	42	32.81	44	63.77	170
12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차별 금지	26	3.09	31	21.99	20	15.63	39	56.52	116
13	인권교육 강화	25	14.12	41	29.08	33	25.78	47	68.12	146
14	기타	3	1.69	0	0	0	0	0	0	3
계		839		623		608		476		2,549